

의안번호	제 231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3월 일 (제407회)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발 의 자	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3월 7일

#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박용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1
----------	-----

발의연월일 : 2023년 3월 7일

발 의 자 : 박용규 · 김현문 · 이정범  
박병천 · 박재주 · 유상용  
이윅희 의원

## 1. 제안 이유

현재 충청북도는 11개 시군 중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제천, 단양 6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음성, 충주도 곧 감소지역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향후 충북의 2/3 이상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음.

이러한 충북의 지역소멸 위기는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불균형을 초래하며 충북교육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학령인구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라. 지원대상(안 제4조)
- 마. 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 바. 예산확보(안 제6조)
- 사. 지원계획 등 심의(안 제7조)
- 아. 관계기관과의 협조(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붙임
- 나. 비용추계: 붙임
-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예산과

##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북도의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충청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 매년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

2. 학생 진로·체험활동 지원사업
3. 저소득·다문화·탈북 가정의 학생 지원사업
4.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지원계획 등 심의)** ①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해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예산 규모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한다.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충청북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 관계 법령

##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약칭:인구감소지역법)

[시행 2023. . 1.] [법률 제18787호, 2022. 6. 10., 제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도와 시·군·구를 합쳐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지역주도의 제6조에 따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을 추진한다.

②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부처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지원계획 및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상호 간 행정구역을 넘어서 주민 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하여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내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와 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 중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학교 중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 학교 및 그 분교를 폐교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초등학교의 경우 돌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운영할 수 있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초·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설립 기준과 인가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습형 일자리 창출
2. 고용과 복지의 연계
3. 해당 지역의 현안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학 등의 교육시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학 등의 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대학 등의 교육

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대학(이하 “지방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제16조에 따른 지원보다 강화된 지원을 할 수 있다.

⑪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중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지방대학의 학생이나 졸업생에 대하여 같은 법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⑫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대한 지원 또는 보조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약칭: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16호, 2022. 12. 27., 제정]

제10조(학교의 설립 기준 완화) 교육감은 법제22조제6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그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약칭: 국가균형발전법 )

[시행 2023. 1. 1.] [법률 제18877호, 2022. 6. 1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19., 2014. 1. 7., 2015. 7. 24., 2017. 3. 21., 2018. 3. 20., 2020. 4. 7., 2020. 12. 8., 2021. 12. 21., 2022. 2. 3.>

1.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 1의2. “지역혁신”이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개발과 과학기술·산업생산·기업지원·문화·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 1의3. “지역균형뉴딜”이란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초생활권”이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문화·복지·주거·안전·환경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인근 시·군·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3. “초광역권”이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말한다.
4. “지역특화산업”이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시·도의 산업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5. “초광역권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경제·산업 발전을 촉진할 초광역권의 협력산업으로서 제11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6.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7.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나.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도서.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한다.

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8. “농산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과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을 말한다.

8의2. 삭제 <2021. 8. 17.>

9.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지원

## 2. 비용 발생 요인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충청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

## 3. 관련조문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 매년 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
2. 학생 진로·체험활동 지원사업
3. 저소득·다문화·탈북가정의 학생 지원사업
4.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 4.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예산지원

나. 추계 결과

1) 최근 3년 간 교육균형발전 예산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시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보은	514,910	560,048	579,208	589,352
옥천	542,944	588,740	590,941	
영동	644,191	654,579	671,148	353,946
괴산증평	585,556	609,699	547,324	
괴산				281,423
단양	453,440	583,419	611,379	596,819
합계	2,741,041	2,996,485	3,000,000	1,821,540

2) 인구감소지역 교육 예산지원 대상지역

(1) 대상: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2) 지역별 평균 지원액

(단위: 천원)

연도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평균지원액	456,840	499,414	500,000	455,385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2,763,081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5,000,000	
보통교부금	2,763,081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5,000,000	
세 출	2,763,081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5,000,000	
인구감소지역 예산지원	2,763,081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5,000,000	
재원 조달	2,763,081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5,000,000	
의존 재원	소 계	2,763,081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5,000,000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2,763,081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5,000,000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만자, 예비비 등)							